

#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기관(시설)장이 시설정보를 사전등록하고 취업자(취업예정자)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면, 기관(시설)장이 신청하여 발급



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5조

## ●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?

- 접속주소 인터넷 주소창에 <http://crims.police.go.kr>을 입력
- 검색방법 포털서비스에서 '범죄경력회보서' 또는 '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' 검색
- 이용조건 회보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'공인인증서' 사용 로그인
- 이용시간 24시간 신청가능

## ●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 절차(<http://crims.police.go.kr>)

기관(시설)장 시설정보 사전등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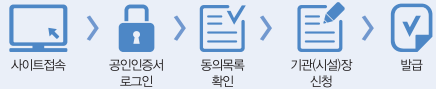
1

취업예정자 등 동의



2

기관(시설)장 신청, 발급



3

※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의 경우 반드시 기관(시설)정보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취업제한 기관(시설)의 장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통해 사전에 기관(시설)정보를 등록하시고, 취업예정자 등 동의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기업의 기관(시설)정보를 확인후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도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보관 가능 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)

구분	당초(2015.4.19.까지)	변경(2015.4.20.이후)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	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과 관련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확인후 즉시 파기함.	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(보관 포함)할 수 있음.

# 성범죄 경력조회는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인 자 (예정자 포함)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최초 근무일 이전에 요청해야 함



### 조회 방법

운영자는 종사자(취업예정자 포함)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'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'를 작성

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 형사(수사)과에 방문·제출

경찰서는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통보

경찰서에서 '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'를 받아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확인

### 제출 서류

-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
- 취업자(취업예정자)의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·허가증 등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: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, 기관장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관련 서류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메인화면) 오른쪽 상단 → 정책안내 → 인권보호 → '성범죄자 취업제한' 안내자료 참조

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

#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



##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

아동·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(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) 10년 동안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임

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



## 성범죄자는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나요? 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)

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



## 성범죄 경력조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?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그 종사자(취업예정자 포함)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경찰서에 요청해야 함

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2항·제3항



### Q 아동·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범위는?

- A
- 강간, 강제추행, 특수강간,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
  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, 성행위 강요,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, 알선영업행위 등
  - 장애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,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, 아동 성학대 행위 등
  -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·배포 등
  -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·추행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,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,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

### Q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범위는?

- A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. 종사자의 범위는 취업자, 취업예정자, 비정규직, 운전기사, 시간제 강사, 공익근무요원, 교육실습생, 외국인 강사, 배움터지킴이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포함합니다.

### Q 여자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나요?

- A
- 성범죄 경력조회는 남·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### Q 종전에 범죄 경력조회를 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가 또 필요한지?

- A
-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며,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'성범죄 경력조회'와 '범죄 경력조회'는 다름)

### Q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는?

- A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는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·확인했다더라도, 성범죄는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-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
- 청소년 활동시설  
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 집, 아영장, 유스호텔, 청소년이용시설(공연장, 영화관, 미술관, 화랑, 도서관, 과학관, 수목원, 자연휴양림, 사회복지관, 시민회관, 어린이회관, 공원) 등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
-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
- 어린이집  
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부모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
- 아동복지시설  
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, 지역아동센터
-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
- 공동주택관리사무소(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
- 체육시설  
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, 검도, 권투 등), 수영장, 당구장, 골프장, 체력단련장, 종합체육시설 등
- 의료기관(의료인만 해당) : 의사(한 의사 포함), 간호사, 조산사
- 가정방문 학습지교사

#### ※ 2013.6.19부터 신규로 추가된 곳

- 경비업 법인(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)
- 게임시설 제공업소  
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(일반PC방), 복합유통게임제공업(멀티방), 청소년게임제공업(일반오락실)
-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
- 청소년활동기획업소(청소년활동 기획·주관·운영을 하는 사업장)
-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
(연기, 무용, 가창 등을 훈련·지도하는 사업장)



### Q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은?

- A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 
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(교육장 등)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 없이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 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(취업예정자 포함)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후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.

### Q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·확인?

- A
-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·교육장은 관련 시설의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·확인해야 합니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

### Q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?

- A
-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: 즉시 해임  
\*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: 기관 폐쇄 요구  
\*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장은 폐쇄, 등록·허가 등 취소  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8조
  -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 
\* 1차 위반 : 300만원  
2차 위반 : 400만원  
3차 위반 : 500만원

